

‘무더기 확진에 사망비보’ 광주 모요양원

요양원 입구엔 ‘출입통제’ 입간판만...인적 ‘뚝’

주변 주민 “불안해서 외출도 못 하겠다” 토로

“감염병이 원상상태네요.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에 사망자까지 나와 불안합니다.”

22일 오전 광주 북구 수곡동 에버그린 노인 요양원 안팎에는 적막감만 흘렀다.

전날 입소자 12명·직원 4명 등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병상 재배치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앞두면서다.

특히 입소자 1명이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의료진과 종사자를 찾아보기 어려

웠다. 요양원은 마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한산하다 못해 쓸쓸스러웠다.

요양원 정문 입구에 텅그러니 놓인 입간판 위에는 ‘출입 통제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금지합니다’고 적혀 있었다.

1층에서는 음식을 조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따금씩 창문 너머로 요양원 내부에서는 관계자들이 서둘러 약품을 챙

겨 옮기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입소자 2-3명은 창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한 직원은 황급히 건물 2층 창가에 있는 휘장을 쳐 실내를 가렸다.

요양원 인근 마을에 사는 김종휘(66)씨는 참고 청소를 하던 중 요양원 발 확진자가 속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분간 바깥 일은 접어야 쓰겠네”라고 말한 뒤 한동안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나올 때에도 별 걱정의 동요가 없었다.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다니 불안하다. 당분간 마당도 못 나오겠다”며 발걸음을 급히 집으로 돌렸다.

주민 황모(68)씨는 “광주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마스크

끈을 다시 조여댔다.

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광주 885번째 환자)을 받은 뒤 입소환자·직원 등 총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은 885번째 환자가 근무하는 3층 7개 생활실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자주 오갔다.

이 가운데 894번째 환자는 전날 오후 7시에 숨졌다. 광주 지역 4번째 코로나19 사망자다. 방역당국은 지침에 따라 24시간 안에 화장한 뒤 유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 15명(대부분 무증상)은 빛고를 전남대병원 격리 병상으로 옮겨진다.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한 입소자·직원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시설 내에 동일 집단 격리되거나 시립 제2요양병원으로 이송 조치된다. 신봉우기자

수면제 이용 남편 살해 60대 부인, 2심도 징역 18년

수면제를 이용,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범행 뒤 내연남을 불러 증거 인멸을 교사한 60대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2일 살인·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내연남 B(6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이 수면제 섭취 뒤 갓 이후 누군가 통화를 하던 중 자신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발신·수신 내역이 없다. 현장에서 몸싸움을 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변론·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수면제를 남편이 먹을 음식에 뿌린 시점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과 방법의 중대성, 결정적 증거들을 인멸한 점, 일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문진 받기 싫어’ 응급실 행패 30대 벌금형

응급 의료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에 술을 마시던 중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져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코로나19 문진 절차를 거친 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무시하며 행패를 이어갔다. A씨는 다른 환자의 출입을 위해 응급실 문이 열린 사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를 폭행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호위반 차량 등과 고의사고 내 보험금 챙긴 30대 구속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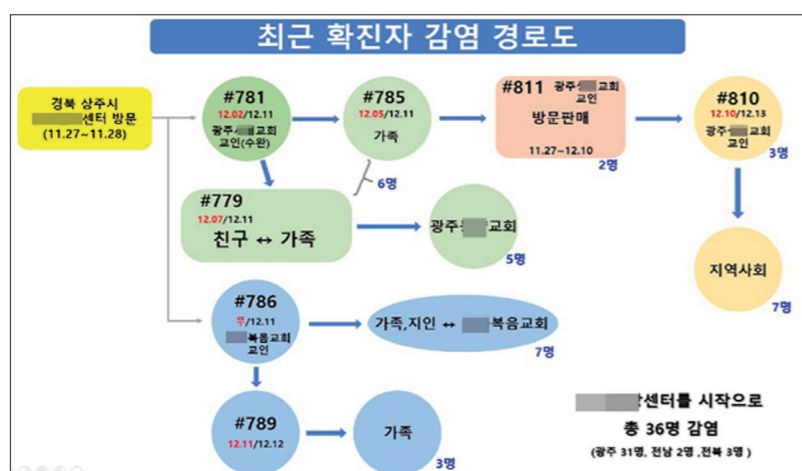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월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와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4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8차례, 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들이 경찰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악용,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 교회발 36명 감염경로’ 경북 종교시설과 연관성 확인

가족·지인·또 다른 교회로 연쇄 감염



광주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발 감염이 경북지역의 종교시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지역의 교회 6곳에서는 목사나 신도, 가족, 타

지역 등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처음 확진 판정된 지표환자의 경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지역 확진자가 경북의 한 종교시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1일 확진판정을 받은 확진자 광주781번은 당시 경북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달 27일과 28일 1박2일동안 경북에서 열린 한 종교단체 캠프에 참가한 것을 파악했다.

이 확진자로 인해 지인과 가족이 잇따라 감염됐다. 이어 또다른 가족은 자신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그곳

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또 가족 중 일부는 유사방문판매업소 설명회 등에 참석했으며 지인 등 3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와함께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810번은 광주 한 교회의 교인으로 확인돼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난 8일 또다른 교인 786번과 접촉이 확인됐다.

이어 786번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경북의 한 종교시설의 모임에 참석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를 통해 광주810번으로 연결됐으며 가족과 지인 목사, 다른 교회로 전파가 이어졌다.

이로써 광주에서는 경북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자가 총 31명이며 전남과 전북지역 확진자 5명 포함하면 36명이다. 조인호기자

여수 화양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인근 3km 육계농장 2곳 이동제한 명령

여수시 화양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가 검출돼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 화양면 주거지 내 도로에 죽어있는 쇠기러기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전남도는 해당 마을 인근 3km에서 운영 중인 육계 농장 2곳의 닭 12만 8000마리에 대해 내년 1월5일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했다.

방역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담양지역 가금류 운반차량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영암과 나주, 장성 육계오리 농장 5곳, 오리도축장 1곳 등 총 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농장 47곳의 오리 16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순천만, 함평 고막원천, 담양 습지, 여수 화양면 등 4건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